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 삭제(2000. 1. 28)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2조 삭제(2000. 6. 7)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33조 삭제(2000. 7. 29)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4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9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1년 4월 25일) 상정 의결 보류
제8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1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가. 제정이유

- (1) 기존의 기술직 공무원이 종합행정(민원조사, 수방, 제설 등)을 수행하면서 소규모공사감독을 병행하여 공사현장에 상주 불가로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었으나 감독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 현장 상주 감독으로 품질향상
 -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
 - 공무원이 계획·설계·감독·준공처리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독자간에 부조리 개연성이 있어 감독위탁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 배제
- (2) 위와 같은 사유로 2000년 9월부터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전면 또는 부분책임감리로 시행하지 않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공사(시·구비 포함)중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 위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각종 공사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가)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 (나)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 (다)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라)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지피직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마)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바)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공사를 말한다.
- (2)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공사(안 제4조)
-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하천복개 구조물, 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 공사
 -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 (3)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민창규)

구청장이 위탁한 소규모 공사중 수탁기관의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할 경우 감독업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1명이 감리할 경우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감리원이 복수로 지정되어 감독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수탁하는 공사의 범위가 막연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라고 한 바, 분야별로 일정한 공사 금액을 정하여 토목조경공사 1억원, 전문공사 8,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원 등으로 그 범위를 조례 또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운영경비의 확보인데, 구비사업의 경우 2001년에는 전혀 공사위탁감리비가 책정이 안 되었으므로 필요시 추경 등의 예산조치가 요망되고, 금년에 시행되는 시비사업은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사전에 조속히 시에 확보 요청되도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감리비용의 과다시 새로운 예산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년월일 : 2001. 4. 1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가. 기존의 기술직 공무원이 종합행정(민원조사, 수방, 제설 등)을 수행하면서 소규모공사 감독을 병행하여 공사현장에 상주 불가로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었으나 감독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 현장 상주 감독으로 품질향상
-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
- 공무원이 계획·설계·감독·준공처리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독자간에 부조리 개연성이 있어 감독위탁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 배제

나. 위와 같은 사유로 2000년 9월부터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전면 또는 부분책임 감리로 시행하지 않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공사(시·구비 포함)중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 위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종 공사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관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직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공사를 말한다.

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공사(안 제4조)

-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하천복개 구조물, 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 공사
-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다.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 시행령 제52조제1항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
- 나. 입법예고기간 : 2001. 3. 5 ~ 3. 25(20일간)
- 다.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관리 대상 공사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직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

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9월 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8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1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가. 제안이유

- o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1) 부지매입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동 745-1외 2필지
- 면 적 : 2,822㎡(853평)
- 매입예정가 : 2,136,254,000원